

수원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1나186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2. 9.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6. 9. 선고 2020가합1157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제1심판결의 제2항에서 설시된 원고의 주장과 더불어,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피고가 위 J동 및 K동 부지 지상에 건축하고 있던 주택을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그와 같은 건축허가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로부터 과다하게 부풀린 설계비를 지급받았으나, 위 위 J동 및 K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3,0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의 제3항에서 들고 있는 그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제정, 판사 박광서, 판사 차지원